

부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3월1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중 상위법과 상충하거나 불부합 부분을 조정하고 비규격봉투 사용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범위안으로 정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
- 신고포상금액을 본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p>○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액중 담배꽂초 투기자를 적발시 포상금을 현행 3만원에서 1천원으로 하는 이유는?</p>	<p>○ 2002년 신고 건수 1,135건중 전문신고자에 의해 담배꽂초 투기자 신고건수가 무려 1,048건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대폭 하향 하였음.</p>
<p>○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를 경찰서 경범죄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p>	<p>○ 현재도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p>
<p>○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현행 1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개정 할 경우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겠는가?</p>	<p>○ 현행 무단투기의 량이 적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하여 이상,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겠음.</p>
<p>○ 명함 스티커 쓰레기가 더 심각한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없는 이유는? 명함 스티커를 돌리는 자에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하면 불법전단지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는데?</p>	<p>○ 불법 전단지를 쓰레기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 광고물로 단속을 해야 하는지 검토한후 조치하겠음.</p>
<p>○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했는가?</p>	<p>○ 과태료 부과는 전부 했으나, 징수는 100% 하지 못했음.</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제출년월일 : 2003. 3.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중 상위법과 상충하거나 불부합 부분을 조정하고 비규격봉투 사용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 주요골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범위안으로 조정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1)
- 신고포상금액을 본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 2항 내지 제4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를 “폐기물관리법관련 부과기준을 별표1에 의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관련 부과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11조의제목 “포상금지급” 을 “포상금지급등” 으로 하고, 동조중 “별표2” 를 “예산범위내에서 별표3” 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무단투기 행위자 신고는 관내 거주자에 한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 ④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3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이하로 지급한다.

별표의1제목 “과태료부과기준” 을 “과태료부과기준(폐기물)” 로 하며

별표1의제1호나목(4)(라)란을 삭제하고 제9호중 “재생처리신고” 를 “폐기물재활용신고” 로 하며 제14호 나목 내지 마목을 다목 내지 바목으로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5	5
--------------------	---	---	---

제16호중 부과금액란을 삭제하고 동호에 가란 내지 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제19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41조)	100	100	100
--	-----	-----	-----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1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 을 “과태료부과기준(폐기물)” 으로 하며 별표2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 을 “과태료 부과기준(재활용)” 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폐기물)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200이상	70이하 300이상	100이하 500이상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 폐기물을 제외한다)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400이상	700이하 600이상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월이상 1월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이상 3월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다)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라)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마)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m ³)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m ³)이상 75톤(50m ³)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m ³)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제·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 의9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 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 기수집·운반업자가수집·운반외에처 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 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 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 ³)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 ³)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이하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 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 2)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5	5
	다.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마.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p>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p>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p>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 제7조제3항)</p>	30이하	70	100
	<p>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 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 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 는 제2항)</p>			
	<p>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건물에 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 는 경우</p>	10이하	20이하	30
	<p>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당해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 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활동 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p>	20이하	30이하	50
	<p>다.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당해 건물 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자가 폐 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p>	50	70	100
	<p>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p>	100	100	1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	100	10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	100	100	

“별지”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재활용)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1.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나.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다.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라.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제2항)	300	300	300
	3.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제2항)	200	300	300
	가.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00	300	300
	(2)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	300	300	300
	나.포장 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	300	300
	(2)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다.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라.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마.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를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바.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m ³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사.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m ³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감량화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아.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자.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15조제5항)			
가.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300	300
	(2)객실과 객실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3)객실과 객실면적이 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100	300
	나.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300	300
	다.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매장면적이 1,000㎡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3)매장면적이 165㎡이상 1,000㎡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4)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200	300
	(5)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	300	300
	(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마.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종합소매업(영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16조제2항)	50	70	1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제34조제3항)	30	50	100

“별 지”

[별표 3]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신 고 대 상 자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1,000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000원	3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000원	
5. 차량,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0,000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폐기물(건축폐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0,000원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2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u>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u>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p>제5조(과태료의부과기준)----- -----폐기물 관리법관련부과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 부과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p>
<p>제11조(포상금지급)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u>별표2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신설 ></p> <p>< 신설 ></p> <p>< 신설 ></p>	<p>제11조(포상금지급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3----- -----.</p> <p>②무단투기 행위자 신고는 관내 거주자에 한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p> <p>④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 3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이하로 지급한다.</p>
<p>[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작성”</p> <p>[별표2]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별지작성”</p>	<p>[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 “별지작성”</p> <p>[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재활용) “별지작성”</p> <p>[별표3]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별지작성”</p>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지(법 제12조) 가. (생략) (1)~(10). (생략) 나. (생략) (1)~(3). (생략) (4). (생략) (가) 및 (다). (생략)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5)~(7). (생략) 다. (생략) 2.~8. (생략)				폐기물관리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및 (다). (현행과 같음) <삭제> (5)~(7)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후)
폐기물 관리법	9.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한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또는제44조의2) 10.~13. (생략) 14. (생 략) 가~라. (생 략) <u><신 설></u> 나~라 (현행과 같음)	100	200	300	폐기물 관리법	9.----- 폐기물재활용신고를----- ----- (-----) 10.~13.(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행위 다.~바.(종전 나~마와 같음)	---	---	---
	15. (생 략) 16.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u><신 설></u>	50	70	100		15. (현행과 같음) 16.----- ----- ----- -----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건물 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5	5
						<삭제>	<삭제>	<삭제>	
						100이하	200이하	3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신설>				폐기물 관리법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 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배출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신설>					다.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 하는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19. (생략) <신설>					17~19(현행과 같음)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	100	100

[별표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1. 휴지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경우	50,000원	30,000원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1,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100,000원	60,000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100,000원	6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000원	30,000원	
4. 행락지등에서 자기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200,000원	10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0,000원	
5. 차량등 운반 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500,000원	150,000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0,000원	
6.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0,000원	200,000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0,000원	
7. <신 살>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20,000원	